

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 『**바보의 나눔 적금**』 특약
2. 변경의 필요성 : 기부금 출연기간 종료
3. 주요 변경 내용 : 기부금 출연기간 연장
4. 신규 조문 대비표 : 하단 참조
5. 시행(예정)일자 : 2019년 1월 21일
6. 사후보고 근거 : 해당사항 없음
7. 상품의 특징 : [첨부] 참조
8. 약관본문 (전체) : [첨부] 참조
9. 기타 참고사항 : [첨부] 참조

	‘중도해지’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,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	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개정 전>

2018. 2.14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-약관-002호(2018.01.04)

「바보의 나눔 적금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바보의 나눔 적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예금 약관』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, 1인 2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4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.

제5조 최소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 단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

제6조 적립방법

이 예금의 추가 적립시,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적립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단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한 경우 1회 최저 1천원이상으로 합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한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- ④ 이 예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우대이율을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이율에 더하여 셈합니다.
 -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의 경우 연 0.5% 우대
 -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전액을 『바보의 나눔』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.5% 우대
 -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일부를 『바보의 나눔』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.3% 우대

제8조 기타

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『바보의 나눔』에 연 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. 단, 본항의 기부금은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

<개정 후>

2018. 2. 14 개정

2019. 1. 21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-약관-180호(2018.12.03)

「바보의 나눔 적금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바보의 나눔 적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하며, 인터넷뱅킹,스마트폰뱅킹 거래시는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서비스 기본약관」을 추가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, 1인 2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4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.

제5조 최소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 단, 인터넷 뱅킹, 스마트폰 뱅킹에서는 1천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

제6조 적립방법

이 예금의 추가 적립시,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적립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단, 인터넷 뱅킹, 스마트폰 뱅킹에서 가입한 경우 1회 최저 1천원이상으로 합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 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한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이 예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우대이율을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이율에 더하여 셈합니다.
 -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의 경우 연 0.5% 우대
 -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전액을 『바보의 나눔』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.5% 우대
 -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일부를 『바보의 나눔』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.3% 우대

제8조 기타

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『바보의 나눔』에 연 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. 단, 본 조의 기부금은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

제 9 조 계약의 해지방법

- ① 이 예금은 영업점,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
단,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, ‘중도해지’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,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